

축제기간 주요 성폭력 사건

① 강제추행

“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동기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속 허리를 감싸 안아서 수치스럽고 불쾌했어요.” (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정280 재구성) - 강제추행

“술을 마시며 진행한 스킨십 게임을 하여, 손을 잡는 벌칙이 걸렸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강제로 입을 맞추고 다른 선배는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어요.” (인천지방법원 2021고합185 재구성) - 특수강제추행

[예방방안]

- 1) 신체접촉이 요구되거나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술 게임 등 사전 차단
- 2) 문제가 되는 발언 내지 행동 발생 시 학생회 구성원 내지 대표에게 즉각 알리도록 지속적으로 공지
- 3) 학생회 구성원 내지 대표, 인권센터 신고창구 등 비상연락망 공유

[대응방안]

- 1) 강제추행을 인지한 즉시, 피해자와 행위자 공간 분리
 -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동성 동행
- 2) 피해자의 1차 요구사항 확인 및 이행
 - 피해자에게 충분한 선택지 제공(ex. 추행중지, 직접 사과, 테이블 분리, 귀가조치 등)
- 3) 피해자, 참고인, 행위자 순으로 상황 진술 요청 및 확보
 - 피해자 또는 행위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, 진술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의 동의를 얻어 추가 진술을 확보

② 성희롱

“축제 포스터나 주점 포스터에 쓰인 문구가 선정적으로 느껴져서 불쾌했고, 주점을 홍보하는 학생들이 꼭 메이드 복장 같은 것을 입어야만 했나 싶었어요.” - 성적대상화, 성희롱

“선배가 다른 동기를 가리키며 ‘재는 몸매는 되는데 얼굴은 별로지 않아?’라고 말하는 걸 듣고, 저 역시도 성적수치심이 들었어요.” - 언어적 성희롱

[예방방안]

- 1) 축제 진행에 있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성상품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및 관리
- 2) 예방교육을 통해, 발생가능한 여러가지의 성희롱 유형을 숙지하고 주의
- 3) 옳지 않은 행동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자유로운 소통의 장 및 문화 마련

[대응방안]

- 1) 성적대상화 등이 발생한 것을 인지 또는 발견한 경우, 빠르게 시정
- 2) 수사의 대상에는 미치지 않는 개인에 대한 성희롱(시각적, 언어적 등)이 발생할 경우, 인권센터에 연계
- 3)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, 그 진술도 충분히 청취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



③ 불법촬영

“공연 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, 어떤 사람이 청바지 입은 제 뒷모습을 몰래 찍고 있었어요. 자세히 보니 엉덩이 부위를 확대해 휴대폰으로 찍고 있더라고요..” (대법원 2021도13203 재구성)

[예방방안]

- 1) 축제 준비 및 진행 중 주요 장소 수시 점검을 통해 설치된 카메라 등 탐지
- 2) 불법촬영 등에 대한 인식 캠페인 등 시행
- 3) 불법촬영 발생시 대응방안 숙지

[대응방안]

- 1) 불법촬영 인지한 즉시 112에 바로 연락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
 -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 해당 카메라를 증거로 제출
- 2) 행위자의 휴대폰 기종, 인상착의 등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기억
- 3) 현행범을 잡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건 발생 현장 주변인의 도움 요청

대상별 대응 방안

[피해자]

- 1) 자신의 탓이 아님을 기억하고,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및 전문기관에게 지지 및 도움 요청
- 2) 날짜,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해두고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증거물 확보(당사자 간 대화는 녹음 가능)
- 3) 강간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, 몸을 씻지 않고 신속히 해바라기센터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와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 수령
- 4) 옷가지와 증거물은 반드시 비닐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(비닐은 습기로 인해 증거 소실될 수 있음)

[행위자(가해자)로 지목받은 경우]

- 1) 자신의 행동 객관화하기(무심코 한 언행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쾌하진 않은 지 등을 돌이켜 생각해보기)
- 2) 2차 피해 가하지 않기
 -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용서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찾아가고 연락하는 행위
 -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체 내에서 일방 입장만을 이야기하며 사건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
 - 사건을 왜곡하거나, 피해자 행실 탓하기 등 악의적으로 소문내는 행위 등

[목격자 및 주변인의 경우]

- 1) 성폭력 사건 목격 시, 신변에 유의하며 지켜보는 이가 있음을 알리고, 위기 시 즉시 112에 도움 요청
- 2) 성희롱 사건 목격 시,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고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인과 분리 조치할 방법을 모색
- 3) 목격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, 향후 목격진술이나 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림
- 4)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지지하고,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
- 5) 행위자를 감싸고 두둔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
(ex. “개가 그럴 리가 없는데?”, “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”, 사건에 대해 여기저기 묻는 행위 등)



예방 유의사항

- ① **성적수치심을 유발**할 수 있는 게임, 문구, 이미지, 발언, 행위 등을 **지속적으로 모니터링**하고 발견 시 즉시 정중하게 **제재**합니다.
- ② 불가피한 **신체접촉이 수반되는 게임, 벌칙 등은 진행하지 않습니다.**
상대방이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느끼는 신체 접촉은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③ 내가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상처, 억압, 폭력, 차별일 수 있습니다.
누군가가 **문제제기**를 한다면 **자의적 판단이나 편견 없이 경청**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.
- ④ 문제가 되는 **상황을 인지**하면 누구든 즉시 해당 언행이나 상황을 **중단시킨 후 책임자(학생대표, 당직 교직원 등)에게 알립니다.**
언제나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생대표단의 비상연락망이 사전에 공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⑤ 불편하거나 불쾌한 상황에서도 선후배 관계, 분위기가 어색해질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등으로 인해 개인이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**사전에 예방**하고, 상황 발생 시 **방관하지 않는** 것이 중요합니다.
- ⑥ 강간,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, 폭행 등 **위중한 피해상황**이라면 **응급지원요청(119), 범죄신고(112), 해바라기센터(성폭력 피해 의료지원 및 증거채취, 02-3672-0365) 및 교내 인권센터(02-2220-1444)에 신고**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.

교 내 지 원

기본연락처	인권센터 (02-2220-1444)
	학생처 학생지원팀 (02-2220-0085)
야간문제 발생시	통합보안상황실 (02-2220-2117~9)
응급조치 필요시	한양보건센터 (02-2220-1466)
상담지원 필요시	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 (02-2220-1498)

교 외 지 원

경찰신고	112
응급상황	119
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(서울대병원 내)	02-3672-0365 (24시간, 성폭력 의료지원/증거채취)
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(송파구 경찰병원 내)	02-3400-1700 (24시간, 성폭력 의료지원/증거채취)
여성긴급전화	1366



한양대학교 인권센터

대응 유의사항

- ① 신고 내용을 **사소한 일로 치부하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.**
- ② 피해자에 대한 **비난 또는 중용**으로 오해되는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.
예) "두 사람 애인 사이 아니에요?" "이 학생 분도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" 등
- ③ **신체접촉으로 위로하는 것을 삼갑니다.** 불가피하게 피해자를 부축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어깨를 감싸거나 팔을 쓰다듬는 등의 접촉을 삼갑니다.
- ④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진술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먼저 **동의**를 구합니다. 만약, 피해자가 충격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이거나 진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원 정도만 확인 후, **질문을 강요하지 않고**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⑤ **서둘러 사건을 종료하려 하거나 화해/용서 권유 등 무마**하려는 시도는 **2차가해**가 될 수 있습니다.
피해자가 느끼는 고통과 호소 내용을 자의적 판단이나 편견 없이 경청하고, 피해자가 동요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.
- ⑥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**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**를 전달합니다. 더불어 사건의 조치는 **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원칙**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고지합니다.
- ⑦ 가해(지목)자가 당황하여 **급하게 상황을 수습**하려 하거나 주변에 **과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**할 경우 **2차가해**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, 공정한 사건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**자중하고 비밀을 유지**하도록 당부합니다.
- ⑧ 사건의 참고인이나 목격자가 있다면, 제3자의 언행으로 인한 **피해자 신분 노출**이나 사건에 대한 **유언비어 유포** 등 **2차 피해**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및 비밀유지를 당부합니다.
- ⑨ 내가 사건의 목격자라면,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최대한 진실한 태도로 조사 등에 **협조**하고, 피해자 신분 노출이나 사건에 대한 **유언비어 유포 등 2차 피해**가 발생하지 않도록 **비밀유지**에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.



진술 양식

[피해자]

성명	(서명)	성별	
소속	교내 / 외부	상세	
대화 녹취 동의 여부	동의함 () 동의하지 않음 ()		
휴대전화번호	행위자와 본인의 관계		
피해일시	피해장소		
피해내용			
목격자 등 참고인 유무	증거물 또는 자료 유무		
당시 행위자(가해자)가 취한 반응 및 행동			

당시 본인(피해자)이 행위자(가해자)의 행동에 대하여 취한 반응 및 행동

원하는 조치(중복가능)	① 가해중지 ② 직접사과 ③ 행위자와 분리 ④ 행위자 귀가조치 ⑤ 교내기관 신고 ⑥ 외부기관 신고 ⑦ 기타()
--------------	--



진술 양식

[참고인/신고 대리인]

성명	(서명)	성별	
소속	교내 / 외부	상세	
대화 녹취 동의 여부	동의함 () 동의하지 않음 ()		
휴대전화번호			
피해자와 본인의 관계		행위자와 본인의 관계	
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(아는 한에서)			
피해목적or진술확보 일		피해장소	
피해내용			
당시 행위자(가해자)가 취한 반응 및 행동			

당시 피해자가 행위자(가해자)의 행동에 대하여 취한 반응 및 행동

피해자가 원하는 조치(중복가능)	① 가해중지 ② 직접사과 ③ 행위자와 분리 ④ 행위자 귀가조치 ⑤ 교내기관 신고 ⑥ 외부기관 신고 ⑦ 기타()
-------------------	--



진술 양식

[행위자]

성명	(서명)	성별	
소속	교내 / 외부	상세	
휴대전화번호		본인과 피해자의 관계	
대화 녹취 동의 여부	동의함 () 동의하지 않음 ()		
신고된 가해 사항에 대한 아래의 사실 확인 (~한 사실이 있습니까?)			
가해 일시			
가해 장소			
가해 내용			
당시 피해자가 취한 반응 및 행동			

당시 피해자의 대응에 대한 본인(행위자)의 반응 및 행동 변화

